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서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(2.3. 공포, 5.4. 시행 예정)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(안 제21조의2)

- 1)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
- 2)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사업타당성조사)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”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2(사업타당성조사) 법 제</u> <u>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</u> <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</u> <u>규모 신규사업”이란 총사업비</u> <u>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</u> <u>말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613